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150-037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2층 / ☎ 2632-6172 / 전송 2632-7480 / <http://www.seoutaxi.co.kr>

문서번호 : 노사 제 134호

시행일자 : 2016. 12. 5

수 신 : 단조 · 분회위원장

참 조 : 사무장

제 목 : ‘운송비용전가금지’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1. 총단결 총투쟁으로 서울택시 근로조건 개선하자!

2.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12월 2일자로 첨부과 같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발표한 바, 이에 각 단조 및 분회에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3. 해당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전액관리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노사간 합의로 운송비용을 반영하여 운송수입기준금을 올리는 행위는 법률위반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단조 및 분회에서는 사업주들이 운송비용전가금지를 피해가기 위해 개별적인 임금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시, 현재 서울중앙임금협정이 진행중인 만큼 이를 수용하지 말고 중앙임금협정의 결론을 기다리도록 지도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국토교통부 ‘운송비용전가금지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 장 강 신 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주요 질의 · 회신 사례**

국 토 교 통 부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지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10.1 특별시·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 '17.10.1부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행정처분) 1회 경고, 2회 사업일부정지(90~120일), 3회위반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위반 1,000만원

□ (실태조사·보고) 시·도지사는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실시·국토부 보고*

* 상반기 : 매년 7.31. 까지 / 하반기 : 매년 1.31. 까지

< ※ 근거규정 (택시발전법 제 12조 등) >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단,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요 질의·회신 사례

1. 납부수입금 관련

Q1.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A1.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을 정하는 행위 자체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서 규율하는 사안이 아니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액만을 수수 하는 행위(일명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에 따른 “전액관리제” 납부·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함

* 기준액을 정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한 사안으로써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간 협의하여야 할 사안

Q2.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후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게 법률 위반인지?

A2.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을 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간 협의할 사안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3. 노·사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운송경비 대비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급 산정산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A3. 성과급 산정산식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써, 노·사간 협의할 사안이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단, 종사자가 받아야 할 기본급여를 유류사용량과 연계하여 공제 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Q4. 택시사업자가 콜비를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A4. '16.12월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의 대상은 유류비, 세차비, 차량 구입비, 교통사고 처리비로써, 콜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아님

2. 유류비 관련

Q5. 노·사가 합의한 특정 기준 대비 지급 유류량을 모두 소모하지 못하여, 잔량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A5.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으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별로 검토 필요

- * ① 통상적인 유류비 사용량과 비교해 볼 때 충족가능한 수치에 해당하는지, ② 유류비 사용량이 성과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③ 유류지급량에 따라 종사자에게 부담을 주는지 또는 혜택을 주는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할 사안

Q6. 장거리 운행 등 이유로 연료비를 종사자가 先 결제하고 회사가 後 지급하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A6. 사업자가 후지급한다고 하여 그 지급 주체가 사업자에서 종사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단, 사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노·사간 합의한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

Q7. 유류비 사용량 등 특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

A7. 사업자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노·사 합의와 무관함

3. 세차비 관련

Q8. 택시종사자가 세차 후 자발적으로 수고비를 제공한 경우는?

A8.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Q9. 택시사업자가 세차시설을 제공했음에도 종사자가 외부에서 세차를 했는 바, 해당 세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9. 사업자가 세차시설의 제공 등 청결 의무를 이행했으나,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외부 세차시설 이용시 세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단, 영업 중 차내 불결과 세차시설 회차 어려움 등 외부세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세차비를 부담하여야 함

Q10. 택시 사업자가 세차비를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세차비를 지급하거나 세차원을 고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위반되는지?

A10.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사업자가 노조에 세차비를 지급하였고, 종사자 세차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